

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시에서는 정부의 3D프린팅산업 전략발표에 따라 구미시의 제조업 혁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內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

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대상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(2) 대 표 : 이영수

(3) 소 재 지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

(4) 출연예정액 : 금400,000천원(도비 200,000, 시비 200,000)

※ 2차년도(' 17. 7월 ~ ' 18. 6월) 소요예산 중 시비 매칭 금액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(공모사업)

(2) 사업기간 : 2016년 7월 ~ 2019년 6월 (36개월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

(금오테크노밸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

(4) 총사업비 : 45억원 [국비33, 도비6, 시비6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'16년	'17년	'18년
계	45	11	19	15
국비	33	7	15	11
도비	6	2	2	2
시비	6	2	2	2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관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(7) 사업내용

-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및 장비 구축
- 3D프린팅 소재기반 제조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3. 8 : 「3D프린팅 부품소재 혁신센터 구축」 기본계획 수립
- 2014. 4 : 「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」 발표(산업부)
- 2014 5~10: 센터구축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

- 2014. 7 : 경상북도·구미시·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체결
- 2015. 4 :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(구미) 공모사업 선정

* (산업부) 6대거점센터: 수도권(시흥), 충청권(대전), 동남권(창원), **대경권(구미)**, 호남권(익산), 강원권(강릉)

- 2016. 4 :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준공 및 운영 개시
- 2016. 9 : 1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예정
- 2017. 7 : 2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예정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3D프린팅(적층형 가공기술)은 전통적인 제조공정 분야에 적용하여 지역 내 전·후방 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
- (2) 장비·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 마련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(4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주요사업 실적

□ 인프라 구축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리모델링

- 건축기간 : 2014. 11월 ~ 2016. 2월
- 사업비 : 35.7억원(도비 11, 시비 24.7)
- 위치 :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50-27 금오테크노밸리 內
- 규모 : 연면적 : 3,882.9m², 지하1층 / 지상4층
- 주요시설 : 3D프린팅 장비실(제작 및 소재연구), 연구지원시설, 거점센터 지원실, 기업입주실 등
- 입주현황 : 6개사(기관 2, 단체 2, 기업 2)



□ 자체 시범사업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

※ 지역거점센터 개소 前 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

- 사업기간 : 2014 . 12월 ~ 2016. 6월
- 사 업 비 : 6억(도 2, 시 2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)
- 주관기관 : 경상북도, 구미시
- 전담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주요내용
 - 3D프린팅 관련 응용기술개발,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기획
 -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및 3D프린팅 기술기반 장비활용 지원
 - 13개 기업(시스템 3건, 시제품 10건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

□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운영 재원)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.

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·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

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·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
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(연구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
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별 표] <개정 2011.12.31>

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(제8조제1항 관련)

기 관 명	
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	11. 한국표준과학연구원
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12. 한국식품연구원
3. 한국천문연구원	13. 삭제 <2011.12.31>
4. 한국생명공학연구원	14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5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15. 한국기계연구원
6. 한국한의학연구원	16. 한국항공우주연구원
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	17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8. 한국전자통신연구원	18. 한국전기연구원
9. 한국건설기술연구원	19. 한국화학연구원
10. 한국철도기술연구원	20. 한국원자력연구원

소관 실·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민 명 숙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148)